

의안번호	2204215
의 퇴 인	이상희 의원
회 답 일	2024. 12. 12.
추 계 번호	24B390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5명 이하)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40명 이하)로 확대 운영하고, 온라인피해 365센터의 기능을 확대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62억 1,500만원(연평균 52억 4,3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온라인분쟁조정 위원회 확대 운영 (안 제44조의10)	5,013	4,253	4,426	4,577	4,732	23,001	4,600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운영 (안 제44조의18)	600	620	642	665	687	3,214	643
합 계	5,613	4,873	5,068	5,242	5,419	26,215	5,243

주: 1.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온라인피해365센터의 현행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직원 증원, 운영비 증액 등의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4조의10(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함(제1항) 1. 조정 대상: 이용자 간 분쟁,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2. 다음 각 목의 조정 내용: 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나. 제44조의2제8항에 따른 임시조치와 관련된 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로 확대	의무규정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와 사안별로 주심위원을 둘 수 있음. 이 경우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봄(제4항)	재량규정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조정부에 1명 이상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제5항)	
		그 밖에 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주심위원 및 전문위원의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7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44조의17(디지털윤리교육)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디지털윤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매년 디지털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2항) 1. 「초·중등교육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사업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4항)	
		그 밖에 디지털윤리교육에 관한 시책, 디지털윤리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실시 결과의 점검 기준, 공표, 필요한 조치, 교육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3	안 제44조의18(온라인피해지원센터) 신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이하 “온라인 피해”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제2항) 1. 온라인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2. 온라인 피해정보 삭제 지원 3.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 4. 온라인 피해 관련 교육·홍보 5. 온라인 피해 관련 정보 수집·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6. 온라인 피해상담·피해구제 지원 관련 종합시스템 구축·운영 7. 온라인 피해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온라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그 밖에 센터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6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44조의10(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안 제44조의17(디지털윤리교육) 신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및 성인 등 전 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윤리 순회강연 및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교육 대상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으로 확대될 경우 교육 방법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디지털윤리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4 예산</th></tr><tr><td>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디지털윤리 교육</td><td>전 국민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강사파견, 체험형 교육, 교구 활용 등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td><td>5,224</td></tr></table>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사업명	사업개요	2024 예산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디지털윤리 교육	전 국민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강사파견, 체험형 교육, 교구 활용 등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	5,224
사업명	사업개요	2024 예산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 －디지털윤리 교육	전 국민의 디지털 역기능 예방·대응 역량 강화 및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강사파견, 체험형 교육, 교구 활용 등 디지털윤리 교육 추진	5,224							
3	안 제44조의18(온라인피해지원센터)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 적용¹⁾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안 제44조의10)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두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로 변경하고, 조정의 대상이 되는 권리침해 정보에 ‘모욕’을 추가하며, 조정 업무의 범위에 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임시조치 관련 분쟁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및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5,405건으로, 연 평균 1,800여건을 처리하였고, 분쟁조정부 운영비로 2023년 기준 3,600만원을 집행하였음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2024. 10.)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	2.5	2.1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표 2] 최근 3년(2021~2023)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연 도	합 계	접수처리								사무처 답변 등
		소 계	조정전 합 의	조정결정	정보제공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기타 ¹⁾	
합 계	5,405	1,784	34	0	360	910	141	120	219	3,621
2021	2,063	548	3	0	141	202	79	66	57	1,515
2022	1,802	551	13	0	118	285	33	26	76	1,251
2023	1,540	685	18	0	101	423	29	28	86	855

주 1) 기타는 조정의 거부 등 건수임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 3] 최근 3년(2021~2023)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분쟁조정부 운영비	38	37	36
분쟁조정 제도 홍보	25	—	—
합계	63	37	36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을 현재의 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내에 5명 이내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며, 조정의 대상이 되는 권리침해 정보에 ‘모욕’을 추가하고, 조정 업무의 범위에 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임시조치 관련 분쟁 등을 추가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기존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업무가 증가할지 알 수 없으나, 기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위원 8배 확대에 따른 지원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 및 PC 구입 등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경비, 안건 검토, 자문 변호사 운영 및 조정 회의 등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운영비,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비용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운영 사례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6명(팀장 1명, 연구위원 1명, 팀원 4명)
- 현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안건 검토 및 자문사례비는 변호사 5인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
- 조정회의의 경우 현재 연 22~24회 개최하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1~1.5시간, 회의참석 수당은 10만원/회
-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운영 중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및 전문위원 등 42명 증원 인건비²⁾)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6명(팀장 1명, 연구위원 1명, 팀원 4명)을 두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개정안에 따른 8개의 조정부에 팀장 1명, 전문위원 1명³⁾, 팀원 4명을 두기 위해 팀장 7명, 전문위원 7명, 팀원 2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
 - 팀장 7명 증원: 102백만원 × 7명 = 714백만원
 - 전문위원 7명 증원: 71백만원 × 7명 = 497백만원
 - 팀원 28명 증원: 69백만원 × 28명 = 1,932백만원
 -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직원 증원에 따른 운영비) 팀장 7명, 전문위원 7명, 팀원 28명 등 42명 증원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보증금·관리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 운영

2)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등 단가

(단위 : 천원)

구분	연봉 및 제수당 ①	법정부담금 ②	1인당 인건비 (①+②)	인원	총인건비
팀장급	86,086	15,871	101,957	7	713,699
전문위원 (변호사)	59,512	11,967	71,479	7	500,353
직원 (5급)	58,060	10,959	69,019	28	1,932,532

주: 법정부담금 : 법정퇴직금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개정안 제44조의10제5항에 따라 각 조정부에 1명 이상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비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입주 청사⁴⁾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

- 사무실 임차료: 250백만원/연
- 사무실 보증금: 189백만원(1회)
- 사무실 관리비: 155백만원/연

[표 5] 직원 증원에 따른 임차료, 보증금, 관리비 세부내역

가. 총 면적: 1,555m²

1) 전용면적: 874m²

- 직원: 7m²×35명 = 245m²
- 임원: 17m²×7명 = 119m²
- 통로 면적 : 9m²×13개소 = 117m²
- 서류/비품함 : 7m²×13개소 = 91m²
- 회의탁자 : 14m²×13개소 = 182m²
- 회의실 : 60m²×2개소 = 120m²

2) 공용면적 : 681m²

※ 전용면적의 77.9%(현재 청사 면적 활용 사례 참고)

나. 보증금 : 189,212,400원

- 121,680원/m²×1,555m² = 189,212,400원(임차 개시연도 1회만 필요)

다. 임차료 : 249,760,368원

- 12,168원/m²×1,555m²×12월×1.1 = 249,760,368원(부가세 포함)

라. 관리비 : 155,176,560원

- 7,560원/m²×1,555m²×12월×1.1 = 155,176,560원(부가세 포함)

주: 단가 등은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사 운영 사례 기준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4) 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

－ 자산취득비: 386백만원(1회)

[표 6] 직원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 세부내역

(단위: 원)

구분	품목	단가	수량	금액
집기류	PC	900,000	42	37,800,000
	모니터	200,000	42	8,400,000
	프린터	300,000	13	3,900,000
	TV	750,000	13	9,750,000
	테이블	850,000	13	11,050,000
	캐비닛	400,000	26	10,400,000
	복사기	3,000,000	3	9,000,000
	책상(임원용)	1,000,000	7	7,000,000
	의자(임원용)	500,000	7	3,500,000
	책상(직원용)	330,000	35	11,550,000
	의자(직원용)	280,000	35	9,800,000
	서랍	180,000	42	7,560,000
	파티션	700,000	42	29,400,000
	녹음전화기	50,000	42	2,100,000
	영상장비(회의실)	2,500,000	1	2,500,000
	음향장비(회의실)	10,000,000	1	10,000,000
	노트북(회의실)	1,500,000	11	16,500,000
	테이블(회의실)	5,000,000	2	10,000,000
	의자(회의실)	230,000	22	5,060,000
	소계			
라이선스	MS	265,000	42	11,130,000
	한글	225,000	42	9,450,000
	PMS	35,000	42	1,470,000
	백신	25,000	42	1,050,000
	GW	130,000	42	5,460,000
	소계			
망분리	서버	35,000,000	2	70,000,000
	스토리지	25,000,000	2	50,000,000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10,000,000	2	20,000,000
	라이선스	300,000	42	12,600,000
	소계			
합계				386,430,000

주: 1. 전문위원실 4개소(2인 1실), 부서 7개소 및 회의실 2개소 증설 기준
 2. 회의실 : 분쟁조정부 회의실(음향설비 및 회의용 노트북 설치) 및 일반 회의실
 3. 단가는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사 운영 사례 기준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공요금 등 운영경비: 101백만원/연
-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운영경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7] 직원 증원에 따른 운영경비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내용	산출내역	금액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	600,000원 * 12월	7,200,000
	전기료	1,000,000원 * 12월	12,000,000
	전용회선 이용료	1,000,000원 * 12월	12,000,000
시설장비 유지비	사무실 인테리어	20,000,000원 * 1식	20,000,000
	사무실 칸막이	20,000,000원 * 1식	20,000,000
	네트워크 등 통신시설	10,000,000원 * 1식	10,000,000
	출입통제 등 보안시설	10,000,000원 * 1식	10,000,000
	회의실 설비	10,000,000원 * 1식	10,000,000
합 계			101,200,000

주: 단가는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사 운영 사례 기준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 안건 검토 및 자문사례비, 조정회의 참석
수당 등 2억 300만원/연
 - 안건 검토 및 자문사례비: 30만원 × 5명 × 12월 × 7조정부 = 126백만원
 - 회의참석 수당: 10만원 × 35명 × 22회 = 77백만원
-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조정의 대상이 되는 권리침해 정보에 '모욕'을 추가하고, 조정 업무의 범위에 정보 삭제 요청에 대한 임시조치 관련 분쟁 등을 추가하기 위한 시스템 개발비(고도화), 서버 구매 비용 및 유지관리비 등 반영
 - 시스템 개발비: 202백만원
 - 서버(H/W) 구매(2EA): 50백만원 x 2EA = 100백만원
 - 유지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에 따라 10% 적용⁵⁾
 - 이때 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시스템 고도화가 완료되는 2026년 이후 무상 하자 보수 기간(1년)을 거쳐 2028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⁶⁾
 - 유지관리비용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5)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년 2차 개정판)」)

6)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S/W의 도입 후 1년 간은 무상 하자보수기간이므로 원천적인 결함 및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보수하도록 함

[표 8]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시스템 개발비(고도화) 산출 내역서

(단위: 원)

구분	평균임금(월)	인원	개발 기간	소계
IT PM	9,525,983	1	5	47,629,915
시스템SW 기술자	5,821,743	3	5	87,326,145
IT지원 기술자	4,493,456	3	5	67,401,840
합계				202,357,900

주: 2024년 적용 SW기술자 평균 임금 적용
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운영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30억 100만원(연평균 46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표 9]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업무 범위 확장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42인 증원 관련	4,509	4,049	4,193	4,343	4,498	21,592	4,318
인건비	3,383	3,512	3,645	3,784	3,927	18,251	3,650
사무실 임차료	260	266	271	276	282	1,355	271
사무실 보증금	197	-	-	-	-	197	39
사무실 관리비	161	165	168	171	175	840	168
자산취득비	402	-	-	-	-	402	80
공공요금 등	105	107	109	112	114	547	109
온라인분쟁조정 위원회 운영비	203	203	203	203	203	1,015	203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302	-	30	31	31	394	79
합 계	5,013	4,253	4,426	4,577	4,732	23,001	4,600

주: 1. 현행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직원 42명 증원, 조정부 7개 증가에 따른 운영 확대, 온라인 명예훼손분쟁조정 처리시스템 고도화 등의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온라인피해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안 제44조의18)

-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피해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개정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피해365센터를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동 센터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 외에 온라인피해 관련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온라인피해 관련 법률 지원 등의 업무가 추가되어 있어, 추가된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표 10]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온라인피해지원센터(개정안) 비교

구분	온라인피해365센터	온라인피해지원센터(개정안)
직무 내용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온라인피해 관련 교육·홍보 ○ 홈페이지 및 온라인피해상담 시스템 운영 ○ 온라인피해 관련 정보 수집 <u>< 신 설 ></u>	○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온라인피해 관련 교육·홍보 ○ 홈페이지 및 온라인피해상담 시스템 운영 ○ 온라인피해 관련 정보 수집 ○ 온라인피해 관련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 온라인피해 관련 법률 지원 ○ 온라인피해정보 삭제 지원 ○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 ○ 기타 온라인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지원 등
인력	사업운영 4명, 상담원 6명	사업운영 6명, 상담원 10명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인건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확대된 센터의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운영 인력 2명, 상담원 4명 등 6명을 증원한다고 가정
 - 사업운영인력 2명 × 6.5백만원 × 12월 + 상담원 4명 × 3.68백만원 × 12월 = 333백만원/연
 -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기본경비) 현행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약 32.6%) 적용

[표 11] 현행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구 분	인건비 (A)	기본경비 (B)			B/A
		합계	공공요금·제세	임차료	
365센터 운영경비 (2024년)	576	188	80	108	32.6%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사업비)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현행 온라인피해365센터의 2024년 사업비 비율(33.1%)를 상한으로 기능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비 반영

- 사업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표 12] 2025년도 추가 사업비 예상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 산
유관기관 연계 협의 등 사업 추진	10
온라인 피해 관련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등 정책 지원	20
이용자 법률 지원 및 피해 예방 교육·홍보 등	40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관리 등	50
합 계	12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현행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확대 운영할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2억 1,400만원(연평균 6억 4,3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표 13]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운영 관련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358	372	386	401	416	1,933	387
기본경비	117	121	126	131	136	631	126
사업비	125	127	130	133	135	650	130
합 계	600	620	642	665	687	3,214	643

주: 1. 현행 온라인피해365센터의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직원 6명 증원, 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센터 운영 확대 등의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온라인피해지원센터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온라인피해365센터의 현행 운영 사례 및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및 온라인피해365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직원 증원, 운영비 증액 등의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